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황보숭희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6459

발의연월일: 2020. 12. 15.

발 의 자:황보승희・金炳旭・허은아

유경준 · 전봉민 · 박대수

김정재 · 서범수 · 양금희

정동만 · 이명수 의원

(11일)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기 위하여 아동·청소년을 유인하거나 성을 팔도록 권유한 자에 대하여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는데, 이는 성매수를 위한 그루밍(grooming)만을 처벌하는 것으로, 심리적 종속 등을 이용한 다양한 성범죄에 대한 처벌규정은 없는 실정임.

이에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성범죄 전반에 대하여 이들 죄를 범할 목적으로 아동·청소년을 심리적으로 종속시키고자 상습적·지속적 으로 유인·권유한 자에 대하여 처벌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그루밍 성 범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15조의2 신설).

법률 제 호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호가목 중 "제7조부터 제15조까지의"를 "제7조, 제7조의2, 제8조부터 제15조까지 및 제15조의2의"로 하고, 같은 조 제3호 중 "제15조까지의"를 "제15조까지 및 제15조의2의"로 한다.

제15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5조의2(아동·청소년에 대한 성범죄 목적의 유인·권유 행위) 제7조 및 제8조부터 제15조까지의 죄를 범할 목적으로 아동·청소년을 심리적으로 종속시키고자 상습적·지속적으로 유인·권유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혅 행 개 정 아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제2조(정의)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생략) 1. (현행과 같음) 2.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말한다. -----가. 제7조부터 제15조까지의 가. 제7조, 제7조의2, 제8조부 터 제15조까지 및 제15조 죄 의2의---나. ~ 라. (현행과 같음) 나. ~ 라. (생 략) 3. "아동·청소년대상 성폭력범 3. -----죄"라 아동·청소년대상 성범 죄에서 제11조부터 제15조까 지의 죄를 제외한 죄를 말한 까지 및 제15조의2의-----다. 3의2. ~ 9. (생략) 3의2. ~ 9. (현행과 같음) <신 설> 제15조의2(아동·청소년에 대한 성 범죄 목적의 유인·권유 행위) 제7조 및 제8조부터 제15조까 지의 죄를 범할 목적으로 아 동·청소년을 심리적으로 종속 시키고자 상습적·지속적으로 유인·권유한 자는 1년 이하의

<u>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u> <u>금에 처한다.</u>